

신한BNPP해피라이프연금저축일본대표기업증권자투자신탁제1호(H)[주식]

집합투자계약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1.1 종류 C-i 수익증권 신설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종류 C-i 수익증권 신설 : 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	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과 같다. <신설>	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과 같다. 종류C-i수익증권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집합투자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
1. 종류 C-i 수익증권 신설 : 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 종류 C1 수익증권 2. 종류 C-e 수익증권 3. <신설> 4. 종류 S-P 수익증권	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 종류 C1 수익증권 2. 종류 C-e 수익증권 3. 종류 C-i 수익증권 4. 종류 S-P 수익증권
1. 종류 C-i 수익증권 신설 : 제39조 (보수)	제39조 (보수) ③ (생략) <신설>	제39조 (보수) ③ (생략) 3. 종류 C-i 수익증권 A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5.200] B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[0.100] C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0.500] D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[0.250]

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- 1. 종류 C-i 수익증권 신설
- 2.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
- 3.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종류 C-i 수익증권 신설 : 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 가)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<신설>	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 가)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C-i수익증권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집합투자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
1. 종류 C-i 수익증권 신설 : 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 다)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신설>	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 다)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C-i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보수 : 0.52% 판매회사보수 : 0.01% 신탁업자보수 : 0.05% 일반사무관리보수 : 0.025%
2.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: 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- 최근현황갱신 (기준일: 2015년 4월 30일)

3.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: 제4부 1. 집합 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 - 최근현황갱신 (기준일: 2015년 4월 30일)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- (1) 기재사항 변경
- 1 종류 C-i 수익증권 신설

2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종류 C-i 수익증권 신설 : 제2부 1. 보수 및 수수료	제2부 제2부 1. 보수 및 수수료 가.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<신설>	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.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C-i수익증권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집합투자증권에 가입하고자 하 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
1. 종류 C-i 수익증권 신설 : 제2부 1. 보수 및 수수료	제2부 1. 보수 및 수수료 다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신설>	제2부 1. 보수 및 수수료 다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C-i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보수 : 0.52% 판매회사보수 : 0.01% 신탁업자보수 : 0.05% 일반사무관리보수 : 0.025%
2.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: 제1부 5. 운용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	제1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제1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- 최근현황갱신 (기준일: 2015년 4월 30일)